

환자들도 알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환자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선의로 수술의 위험성을 축소 설명하였더라도 환자가 숨진 경우 '가족들의 수술여부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여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설명의무위반에 의한 소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의사의 설명의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진료적 설명의무이고 또 하나는 자기결정적 설명의무이다. 전자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예상되는 의료행위 및 관련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의 진료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수술이나 검사 등을 시행하기 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 신체의 침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명·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을 근거로한 의료의 특성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

료침습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의사는 진료에 앞서 환자의 질병 그리고 행하여질 의료처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환자의 승락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에 기초한 진료행위는 위법이다.

설명의무의 유형

· 자기결정설명

자기결정설명의 의의는 진료의 종류와 중대성의 정도 및 환자가 입게 되는 부담과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환자에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의 현명한 행사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는 동의에 앞서 계획된 진료의 본질적 의의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위험의 감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계획되는 진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이해능력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환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진단 및 치료적 침습에 앞서 제공되어야 한다.

· 안전설명

안전설명은 치료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적응성 위험과 치료의 과대평가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에 부합되는 행동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 또는 적절한 사후치료의 적시적인 준비 내지는 보장을 위하여, 이미 밝혀진 소견과 발생된 돌발사고

에 대하여 차후에 진료를 담당할 의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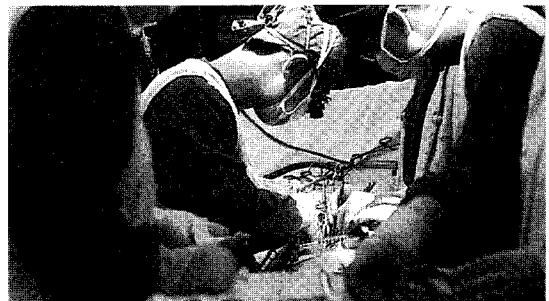
·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설명

자기결정설명과 안전설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의 부실로 인해 병원이용 시 많은 진료비 본인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진료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진료비 수납문제를 염두에 두고 의료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가능성에 회박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사의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의학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과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가 진료행위에 앞서 설명하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수술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은 수술방법, 완치율 및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된다 하겠고 의사의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까지 설명하여 줄 의무는 없다고 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설명의무의 범위를 밝혔다. (서울고법 1984.8.30 선고 83나4612) 통상적으로 설명의무의 범위는 첫째, 의사는 환자의 질병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둘째, 질병의 예후·방치 할 경우의 상태치료방법과 진료수단,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셋째, 치료경과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판례

· 수술 전 위험성을 줄여 설명한 뒤 수술 후 사망하면 병원 측의 과실이다. 수술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었고 의사가 환자 및 가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선의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줄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서울지법 1997.3.17 선고 판결)

· 투약에 의한 치료상의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사전설명 없이 투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 의사의 일반적인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